**수익증권 매매계약서**

본 수익증권 매매계약(서){이하 **“본 계약(서)”**}은 2021년 [10]월 [15]일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  |  |
| --- | --- |
| **매도인1:**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2) |
|  |  |
| **매도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
|  |  |
| **매수인:**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

**전 문**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한 한화 미국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호(이하 **“본건 투자신탁”**)는 총130,900,000,000좌의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총좌수**”)을 발행하고 있고, 매도인들은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총 130,900,000,000좌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수익증권은 최초 설정 당시 기준가 1좌당 금 1원(₩1)이다.

매도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해 매도인1은 [16,054,815,721좌를, 매도인2는 [3,685,184,279]좌를 (단, 본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수익증권에 대한 원본 상환 존재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자 한다.

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수익증권의 매매)**

매도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함과 동시에 매매목적물 관련하여 투자계약서의 당사자가 되고자 한다.

**제2조 (매매대금 및 정산금 등의 지급 등)**

1.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될 매매대금은 아래 (나)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단, 본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이하 **“매매대금”**)으로 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본 계약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정의에 따른다.

* “매매목적물 기본대금”은 해당 매도인의 해당 매매목적물의 좌수에 1좌당 1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기수령 경과이자”는 본건 투자신탁이 그 투자대상인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거래종결일 전에 차주로부터 실제 수취한 이자를 말한다.
* “수령예정 경과이자”는 본건 투자신탁이 그 투자대상인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거래종결일이 해당 이자기간 중에 있고 거래종결일 이후에 해당 이자기간의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여 본건 투자신탁이 실제 수취할 예정인 이자를 말한다.
* “매매목적물 지분비율”은 해당 매도인의 해당 매매목적물 좌수가 수익증권총좌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집합투자기구 관련 수수료”는 본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에 지급하는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관련 수수료로 거래종결일까지 지급된 수수료와 직전에 지급된 수수료 이후로 다음 지급일에 지급할 수수료 중에 거래종결일까지 기간 동안 일할 계산한 수수료를 말한다.
* “수령예정 경과이자에 대한 매도인귀속분”은 수령예정 경과이자에 매매목적물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에 수령예정 경과이자 관련 해당 이자기간의 초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일수를 곱하고 해당 이자기간의 일수를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1. 당사자들은 기수령 경과이자에 대해 본건 투자신탁이 거래종결일 전에 매도인에게 모두 분배를 하고, 수령예정 경과이자에 대해서는 거래종결일에 매매대금으로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매매대금= 매매목적물 기본대금-(집합투자기구 관련 수수료x매매목적물비율)+(수령예정 경과이자에 대한 매도인귀속분)

단, 거래종결일 기준 수령예정 경과이자에 대한 매도인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다.

|  |  |
| --- | --- |
| 매도인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매매목적물(좌) | [16,054,815,721] |
| 매매대금(원) | 위의 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는 금액 |

|  |  |
| --- | --- |
| 매도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매매목적물(좌) | [3,685,184,279] |
| 매매대금(원) | 위의 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는 금액 |

1. 매수인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날짜(단,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할 예정인 한화 미국호주 PPP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수익증권 매매계약서에 따른 거래종결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이하 **“거래종결일”**)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  |
| --- | --- |
| 계좌개설은행 | 농협은행 |
| 계좌명의인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계좌번호 | 083-05-000497 |

|  |  |
| --- | --- |
| 계좌개설은행 | 신한은행 |
| 계좌명의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계좌번호 | 150-000-052413 |

1. 매수인은 매도인이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2일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집합투자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한화 미국호주 PPP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투자자약정서(이하 **“투자계약서”**)의 “매입약정인수약정서”(투자계약서 [별첨 1] 양식에 따름)를 작성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기 전에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매도인이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4일 집합투자업자, 스왑은행 지위에서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및 신탁업자 지위에서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Capital Call 약정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각 별도 약정서 체결)와 같은 내용의 Capital Call 약정서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4일 집합투자업자, 스왑은행 지위에서의 국민은행 및 한국투자증권 사이에 체결한 Capital Call 약정서(국민은행 및 한국투자증권 각 별도 약정서 체결) 에 대해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약정서상의 “갑”인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협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자로서 투자약정서상 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 (매도절차의 이행)**

1.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 전부를 본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인 DB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판매회사**”)에 개설된 매수인이 요청하는 계좌 (계좌번호: DB금융투자 [ ])로 계좌간 대체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 고객계좌부의 인증된 사본을 판매회사를 통해 매수인에게 발급 및 교부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가 수익자명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제3항 이외에도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본건 투자신탁 수익자로서의 지위와 동등한 법적 및 실질적 지위를 인정 받고,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권리 행사 및 대항요건 구비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매도인으로서 협조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은 매도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매거래의 완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본건 투자신탁 관련 투자계약서에 따른 매수인 명의의 매입약정인수약정서의 제출 또는 본건 투자신탁 관련 Capital Call 약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의 체결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매도인에게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매매의 효력)**

1. 제2조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 및 제3조에 의한 매도절차의 이행이 모두 완결(이하 “**거래종결**”)된 때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갖는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거래종결일부터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거래종결일 전에 본건 투자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및 배당을 제외하고 본건 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기타 일체의 이익금을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선행조건)**

1. 매수인의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선행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6조의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고 정확할 것
3. 매도인이 자신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필요 시 사용인감계 포함) 원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할 것
4. 매도인이 투자매매목적물 양도에 대해 집합투자업자의 동의를 받았을 것
5. 매도인이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내부수권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을 것
6. 매도인의 제3조에 따른 매도절차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제7조의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고 정확할 것
8. 매수인이 자신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필요 시 사용인감계 포함) 원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매도인에게 교부할 것
9. 매수인이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것
10. 매수인이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내부수권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을 것

**제6조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매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거래종결일 현재 매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자진술하고 보장한다.

1. 매도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이다.
2. 매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권한과 능력이 있고,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 정부 인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3. 매도인은 그 소유인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법률상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매매목적물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포함한 법원의 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4. 본 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도에 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이전하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는 데에는 더 이상의 조건성취나 요건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5.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도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매도인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매도인을 구속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나 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매도는 매도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매도인은 일반채권자를 해(害)할 의도로 매매목적물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
7.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타인의 동의, 승인이나 통지는, 매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완료하였거나 거래종결일까지 완료하여 거래종결일 현재 유효한 상태에 있다.
8. 매도인이 아는 한,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및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된 서류 등은 중요한 사실에 대한 거짓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제7조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매수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이다.
2. 매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매수하고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권한과 능력이 있으며,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 정부 인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수와 매매대금의 지급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매수인의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매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일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각 진술 및 보장사항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기타 의무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위반을 치유할 것을 요청한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
4.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이 모두 이행되기 이전에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청산, 지급정지,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5.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i)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ii) 매수인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반환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취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6.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제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한다.
2. 본 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손해액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지 않거나 해제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를 두고 있는 시중은행 중 최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경우, 본 조 제2항의 시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세금 및 비용)**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 및 각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11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로 받아야 한다.

|  |  |
| --- | --- |
| **매도인:**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소: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2)  참조: 윤현우 차장  전화: 02 768 7419  팩스: 0505 083 1417  전자우편: kevinyoon@nhqv.com |
|  |  |
| **매도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소: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참조: 최서웅 차장  전화: 02 – 3772 – 7058  팩스: 02 – 3772 – 7686  전자우편: ryan.choi @ hanwha.com |
|  |  |
| **매수인:**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참조: [김성수 대리]  전화: [02-6303-6466 ]  팩스: [ ]  전자우편: [sungsookim88@kdblife.co.kr] |

**제12조 (양도 등)**

1.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계약은 본 계약 당사자들 및 그들 각자의 승계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3조 (일부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4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조건의 포기는 본 계약의 당사자의 서면 동의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비밀 준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본 계약과관련하여 법률고문 또는 회계사, 기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 사본을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고,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의 거래종결일 또는 본건 투자신탁의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존속한다.

**제16조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계약의 체결ㆍ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기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실행은 각 당사자 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각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차 책임 또는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당사자에게는 그와 관련된 책임 또는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개별책임의 원칙).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 페이지에)*

본 계약의 적법한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한 다음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
| --- | --- | --- |
| **매도인:**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영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 --- |
| **매도인:**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희 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 **매수인:**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철 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